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6. 18.(일)

정부가 인수위 당시부터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알고도 보증보험 부실화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<보도 내용 (매일경제, 6. 17) >

◆ 정부는 전세사기 알고 있었다...손 놓은 이유는?

- 인수위 시기 '깡통전세' 예견, 전세보증 가입 의무화시 진정한 보험으로 기능 가능하나 정부는 우량주택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실화 조장

- 인수위 시기(`22.3~`22.5)는 전세가격 하락이 아닌 전세가격 상승 우려 (갱신계약 만료 최초 도래)가 제기되었던 시기*로,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전세보증 가입의무화 등이 논의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* 정부 출범 직후 임차인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「임대차 시장 안정방안」 발표(22.6.21)

- 전세계약은 사인 간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사적 계약이자 월세라는 대체재가 있으므로,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 보험은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등록임대 사업자에 한하여 의무가입(임차인은 자율가입)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모든 전세계약에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개입인만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.

- 정부는 전세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며 서민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, 이 과정에서 공론화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며 논의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주택정책관	책임자	과 장	성호철 (044-201-4129)
	주택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의연 (044-201-3327)